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등〉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05호)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0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징계·징계부가금의 근거규정 신설 및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5
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사건범위 확대	13

I . 제 안 경 위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30.
3. 회부연월일 : 2024. 12. 31.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30.
3. 회부연월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징계는 법률이 아닌 관련 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지 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통보 의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징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34조의2).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을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공공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은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방지·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및 제80조의2).

Ⅲ. 검토의견

1. 징계·징계부가금의 근거규정 신설 및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개정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해당됨)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한편, 각각의 범죄 유형에 따라 징계시효의 차등을 두어 i)성비위 관련 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장기인 10년, ii)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¹⁾ 등에 대해서는 5년 iii)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3년의 징계시효로 정하려는 것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63조의6제5항)²⁾.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4(징계 등)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징

1) 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채용비리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채용비리를 그 밖의 사유로 보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2) 현행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5년,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3년의 징계시효로 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계할 수 있다.</u> ② <u>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③ <u>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u>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0년</u>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금지행위</u>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u>성희롱</u>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스토킹범죄</u> 2. <u>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u>

현 행	개 정 안
	· 유용, 채용비리: 5년 3. 그 밖의 사유: 3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징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및 징계부과금 사유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u><신 설></u>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다음 각 호의</u> <u>구분에 따른 기간</u> ----- -----.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유: 10년</u>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u>호에 따른 성희롱</u>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스토킹범죄</u> 2. <u>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u> · <u>유용: 5년</u> 3. <u>그 밖의 사유: 3년</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징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유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제6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지방출자출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권 및 징계부가금

우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기관장의 징계권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① 지방공무원³⁾, 지방공기업 종사자⁴⁾에 대해서는 이미 기관장의

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사. (생략)

징계권과 징계부가금의 근거규정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 및 ②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종사자 역시 지방공기업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징계시효 연장

① 성비위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성비위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규정 현황에서는 104개 지방공기업 중 89개 기관(약 85.6%), 187개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159개 기관(약 85.0%)이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다수의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⁵⁾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분류	징계 시효					
	합계	2년	3년	5년	10년	규정 없음
지방공기업	104	1	89	1	13	0
지방출자출연기관	187	1	159	2	23	2
계	291	2	248	3	36	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4. 7.)

4)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현재 지방공공기관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이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성비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의 도과로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⁶⁾

이러한 상황에서 성비위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타 범죄보다 장기인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은 ① 현재 국가·지방공무원⁷⁾과 공공기관 임직원⁸⁾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이라는 점, ②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2024. 7. 8.)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6)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24. 7.

7)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징계 시효)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성비위 범죄와 마찬가지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음.

스토킹 범죄는 최근에 그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1. 17.)되었는데, 스토킹 범죄 역시 성비위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소속기관이 뒤늦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비위 범죄와 같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성비위 범죄와는 달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임직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⁹⁾.

9)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징계 시효)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i)경찰청에서는 성매매, 성폭력 등 성비위범죄는 강력범죄로 구분하는 반면, 스토킹범죄는 일반범죄로 구분하는 점, ii)스토킹처벌법은 최근 법제정(‘23.1월)으로 범죄 정립 및 형상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징계시효 연장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사건범위 확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사건의 조사나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함)가 개시·종료되었을 때, 해당사실과 결과를 그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보의무가 있는 사건의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통보사건의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 뿐만 아니라 성비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4조의2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u> 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u> 에 대하여 다음----- ----- <u>사건</u> 에----- ----- ----- -.

현 행	개 정 안
1. 감사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u> ----- ----- -----.
1. <u>감사원</u>	1. <u>직무와 관련된 사건</u>
2. <u>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u>	2. <u>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u>
3. <u>행정안전부장관</u>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현 행	개 정 안
	<u>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u> <u>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u>항</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성비위 사건 및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통보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이 제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성비위 사건의 경우 소속기관이 뒤늦게 인지하여 성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으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도과하여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이 확인되었음¹⁰⁾.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 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이었음.¹¹⁾¹²⁾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운영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24.5월)]

기관 구분	계	2가지 이상 운영	일부 운영			미운영
			소계	자진 신고	운전경력 증명서 확인	
지방공기업	104	16	18	4	14	70 (00%)
지방출자·출연기관	187	7	25	3	22	155 (00%)
합계	291	23	43	7	36	225 (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4. 7.)

이러한 문제점을 현행 제도내에서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비위 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건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지방공공기관 종사자 역시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성

10)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 ‘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4. 7. 17

11) 감사원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관련 지침에 도입하도록 권고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보고서, '24.1월)

12)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 시행함(‘24.12.30.)

- 징계 누락·회피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자진신고제도* 또는 운전 경력 증명서 확인제도**를 실시토록 규정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시, 일정 기간 내에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

** 주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사실 확인

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임.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2024. 7.)을 통해 행정안전부에게 지방공공기관 수사통보대상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음.

② 스토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통보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성비위 사건 및 음주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의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 사건 역시 성비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소속기관에 뒤늦게 인지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지방공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경우¹³⁾ 그 임직원의 범죄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 범죄, 성비위 범죄, 음주운전 범죄만 수사기관에서 통보하고 스토킹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1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14) 참고로 지방공무원은 모든 범죄가 소속기관에 통보됨
「지방공무원법」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i)경찰청에서는 성매매, 성폭력 등 성비위범죄는 강력범죄로 구분하는 반면, 스토킹범죄는 일반범죄로 구분하는 점, ii)스토킹처벌법은 최근 법제정(‘23.1월)으로 범죄 정립 및 형상화가 미흡하고 오인신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등의 통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

제73조(징계의 관리)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